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

영주시에서는 2024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. 4. 1.

영 주 시



1. 사업개요

- 신청기간 : 2024. 4. 8.(월) ~ 4. 19.(금) 18:00까지
- 사 업 비 : 약 2백만원(도 600, 시 1.400) * 자부담 별도
- 이 사업량: 완속충전기 2기 * 지원물량은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금액 : 최대 100만원/기(충전기별 차등 지급)

2. 신청대상 및 자격

- ①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(또는' 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) 개인 또는 기업(법인) 중 영주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
 - *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타 보조금을 미지원 받은 경우에 한함
 - *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과금형 휴대용충전기에 한하여 지원
 - * 지상 설치 우선 지원(지하주차장 설치 지양)
- ②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, 상이·독립유공자, 다자녀가구 우선 지원
- ③ 영주시에 지방세 등 (환경개선부담금, 과태료 등) 체납이 없는 자에 한함
- ④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

3. 보조금 지원 충전기(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)

- 화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(ev.or.kr)에 등록된 수행기관의 충전기
- 경상북도 내 기업에서 생산된 충전기
- ㅇ 기타 비공용 충전기 전문 생산 업체에서 제작된 충전기
 - *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* KC인증서
 - * 전기안전인증서
- * 책임배상물 보험 가입
- * 국내제조 제품

4.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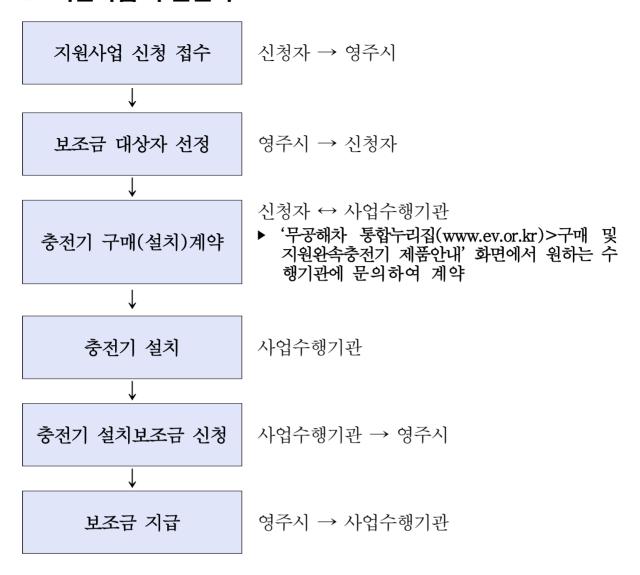
○ 완속충전기 구매·설치 비용의 50% 한도 내에서 지원(자부담50% 필수)

(단위: 만원/기)

구	17]	2~57]	6기 이상	
 완속충전기	11kW이상	100	90	75
(C타입, AC)	7kW ~ 11kW미만	90	80	70
키오스크 충전기		90(27))		
전력분배형 충전기(7kW)		70(27])		
과금형콘센트		30		

- ㅇ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, 보조금 한도 초과 비용은 설치희망자 등이 부담
- 키오스크 충전기는 기본 2기를 지원하며, 1기 추가 시 추가보조금 45만원 지원
- 전력분배형 충전기(7KW)는 최대 2기까지 전력분배할 때 지원하며, 기본2기에 70만원 지원
- ㅇ 과금형콘센트의 경우 기존 전기배선을 활용한 단순교체가 가능함. 단 누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금형콘센트 운영 사업수행기관은 충전정보의 교환. 전력 분배 또는 차단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함.
- ㅇ 동일 장소에 설치된 과금형콘센트는 모두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, 하나의 차단기에 최대 2기의 과금형 콘센트만 설치 가능

5. 지원사업 추진절차



6. 신청기간 및 방법

○ 신청기간 : 2024. 4. 8.(월) ~ 4. 19.(금)

○ 신청시간 : 09:00 ~ 18:00 ※ 공휴일(토·일요일 포함) 제외

○ 신청방법 : 방문(서면) 접수

○ 접 수 처 : 경북 영주시 시청로 1, 영주시청 환경보호과(보건소 신관 2층)

(2054-639-6757)

○ 제출서류(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)

(공통) 제 출 서 류

-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[서식1]
- ②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1부 [서식2]
- ③ (개인) 주민등록초본, (사업자) 사업자등록증
- ④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
- ⑤ 설치희망지 등기부등본 1부
- ⑥ (신청자와 설치희망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)
 - 부지사용 승낙서[서식3].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
(우선순위) 제 출 서 류				
차상위 이하 계층	차상위 증명서(수급자 증명서)			
장애인	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등록증			
국가유공자(상이, 독립 등)	국가유공자 등록증			
다자녀(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)	가족관계 증명서			

7. 사업수행의 대상(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)

-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사로 한국환경공단에 충전기 제품이 등록된 사업자
 - *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(ev.or.kr)에서 열람 가능
- 일정 자격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·납품할 수 있는 충전기 제작사
 - *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 * KC인증서
- - * 전기안전인증서
- * 책임배상물 보험 가입

* 국내제조 제품

8. 대상자 선정

- 신청자 중 선정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개별 연락
 - 문자메세지(SMS) 또는 공문 발송
- ㅇ 선정기준

순 위	지 원 대 상
1	우선순위 해당자 [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> 상이·독립유공자> 다자녀가구)]
2	사업장
3	단독주택

- 지하주차장 설치, 완속충전기 기설치된 장소는 최하위 순위로 조정
- 선정순위 내 동순위자는 ①전기자동차 보유대수 > ②접수일로부터 영주시 연속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
- 신청기간 내 지원물량 미달인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간을 연장
- 선정 대상자는 희망 제조사와 충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액을 제외한 충전기 설치대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

9. 보조금 지급

- 지급 신청기한 : 2024. 6. 28.(금) 18:00까지
 - 지급신청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포기로 간주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
 - (방문)18:00까지, (등기우편)신청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
- 제출서류

보조금 지급 제출서류

- ①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 [서식4]
- ② 충전기 설치 계약서
- ③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 [서식7]
- ④ 위임장 [서식5]
- 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 [서식6]
- ⑥ 사업자등록증(제조·판매사)
- ⑦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(검사) 결과서
- ⑧ 하자보증서
- ⑨ 세금계산서
- ⑩ 통장사본(제조·판매사)
- ① 사업수행기관 적격 확인 서류
 - 전기공사업 면허, KC인증서, 전기안전인증서, 책임배상물 보험가입 증서, 국내제조제품 등록증

10. 기타사항

- ㅇ 충전기 설치장소는 영주시 관내만 가능
- 충전기 설치장소는 이면도로 및 타인의 통행에 불편이 있는 장소가
 아닌 적합한 주차공간이어야 함
- 사업수행기관는 「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(환경부)」에서 정하는 현장조사, 설계도서 작성,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함
- 설치한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·관리 등의 책임이 있으나,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 있음
-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
 및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,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
 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
-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고, 충전기 수량, 제품 등 주요 내용이

-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영주시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
-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희망자에게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함
- 구조물 및 제품의 A/S 주체는 사업수행기관이므로 신청자와 계약체결 시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함
- 국가 또는 한전의 충전기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며, 추후 중복 신청 발견 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
- 충전기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영주시청은 개입할
 수 없으므로, 신청자는 사업수행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
- 신청자 및 사업 참여자 등은 안전한 충저기 사용 및 설치를 위해 적극
 노력 해야하며,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안전관리 사항에 협조해야 함
- 충전기 사용요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공공완속충전기 사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
-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위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「,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(환경부)」, 「204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 기 보급사업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(경상북도)」, 영주시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따름

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

신청자(기관명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		
주소	연락처					
충전기 종류	□ 완속C타입□ 키오스크□ 전력분배형□ 과금형콘센트(기)(기)					
충전기 개방여부	□ 개방(공동사용) □ 미개방					
	□ 단독주택 □ 사업장 □ 기타					
사라하다고	□ 지상 □ 지하					
설치희망지	(지번 주소)					
	(도로명 주소)					
전기차 보유여부	□ 보유중(대) □ 인도예정(대)					
	회사명 대행					
충전사업자(제조사)	모집사 담당자명 (연락처)					
2024년 영주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
	년 월 일					
영주시장 귀하 신청자 : (
2. 첨부서류 4. 5.	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 (개인)주민등록초본, (사업자)사업자등록증설치희망지 등기부 등본 (설치희망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) 부지사용 승낙서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			
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

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 및 제3자위탁·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

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[필수]

[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- 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[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- ·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□ 동의함

□ 동의하지 않음

)

2.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[필수]

[위탁·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

- ·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주소, 신상사항 등)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[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]
- ·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(사업자명:

「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〕

· 환경부, 한국환경공단, 한국자동차환경협회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

- · (충전기 설치사업자)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
- · (환경부, 한국환경공단, 한국자동차환경협회) 충전기 설치실적, 전산처리 등 관련 자료 작성에 이용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□ 동의함

□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"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"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:

(인)

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부지 사용 승낙서

설치투	<u>-</u> 조	(지번 주소) (도로명 주소)				
성명 (기관명) 부지			연락처			
소유자	주소					
완속충전기 보급사업	성명 (기관명)		연락처			
보다시 다 신청자	주소					
부지사용	·목적	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기 설치 및 이용				
부지사용	가간	2024년 월 일 ~ 년 월 일 (설치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)				
상기 부지소유자는 2024년 영주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지에 완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을 승낙합니다.						
변 월 일 영주시장 귀하 부지소유자(기관): (인)				_		
첨부서	류 2	l. 부지 등기부등본 2. 부지소유자 (개인)주민등록등년 3. 부지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	•		록증	

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 신청서

신청자 (사업수행기관)			대표자		
주 소			연락처		
		□ 공동주택	□ 사업장	□ 기E	ł()
설치 	상소	도로명주소			
	모델명	충전기 종류 (설치대수)	충전기 가액 (C=A+B)		
충전기 설치내역			자부담(A)		
		(기)	보조금(B)		
	은행명		예금주명		
보조금 입금계좌	계좌번호				
지급요청액		금	원 (₩)
2024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			202	24년 월	일
영주시정	∤ 귀하		신청자 :		(인)
1. 위임장 2. 설치완료 확인서 첨부서류 3. 사업자등록증(제조사) 4. 청렴이행서약서 5.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증		6. 하자보증7. 세금계산8. 제조사 등9. 사업수행10. 충전기	·서 통장사본 기관 적격 확인	<u>l</u> 서류	

위 임 장

OI OI TL	성 명 (기관명)	(인)인감도장/서명
위 임 자 (위임을 하는자 - 신청자)	생 년 월 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	
수 임 자 (위임을 받는 자 - 사업수행기관)	업체명/대표자	(인)
	법 인 번 호 (사업자번호)	
- 시ㅂ구청기진)	주 소	

상기 위임자 는(은) 수임자 에게 2024년

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련(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작성 및 보조금 수령 등)사항에 대해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.

붙임 위임자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1부.

2024년 월 일

위 임 자 :

(인)

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

전기자동차 완속 충전시설 설치완료 확인서

신청자 (기관명)			(대표자)			
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연락처			
설치장소	□ 단독주택 □ 사업장 □ 기타					
걸시경소	도로명 주소:					
설치내역	□ 완속C타입 (기)	□ 키오 (스크 □ 전력 기) (분배형 [기)] 과금형 (콘센트 기)
충전기 종류	제작사: 판매사: 모델명: 설치용량:	kw				
▼ 전경(전체) /	사진		▼ 충전기 설	치 사진		
2024년도	전기자동차 완속	충전기 년	보급사업과 관련	변하여 위와	· 같이	
충전기 설치	를 완료하였음을	· 신고합니	1다.			
				2024년	월	일
		신 청	자:	(9	인)	
	사업수행기관:		기관:	(2	직인)	
영 주 시	장 귀하					

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청렴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영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영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~제40조) >

-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~제40조)
 - ▶ 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▶ 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1. 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)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 - 2. 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 - ▶ 제39조(벌칙) ① 제14조(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) 또는 제15조(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)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1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 - 2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 - 3. 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또는 제29조(검사)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 - ▶ 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・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자:

(서명 또는 인)

영 주 시 장 귀하

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포기서

- 1. 포 기 자
 - O 성 명(기관명):
 - O 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:
 - O 주 소:
 - O 연 락 처:
- 2. 사업 포기 내역

사업명	보조금액(원)	신청 충전기종
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	원	
포 기 사 유		

상기와 같이 『2024년 영주시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』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, 상기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.

2024. . .

포기자 성명(법인명): (인)인감도장

영주시장 귀하